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

사전안내 및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편

Seoul Design 서울디자인재단

1 컨설팅 운영 절차 및 방법

▢ 단계별 운영절차

① 컨설팅 사전협의	➡	② 컨설팅 신청 및 접수	➡	③ 컨설팅 시행 및 결과 통보(6일)
사업부서 및 자치구		사업부서 및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UD팀** UD자문단
④ 컨설팅 결과 반영 및 회신(3일)	➡	⑤ 반영여부 검토 및 확인서 발급 (2일)	➡	⑥ 위원회 심의 접수
사업부서 및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UD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단계별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휴일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컨설팅 사전협의(사업부서→서울디자인재단 UD팀)

- 시　　기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접수 1주전**
- 내　　용 : UD컨설팅 대상 여부, 제출자료 및 일정 협의
- 담　　당 : UD팀 (02-2096-0138, udconsulting@seouldesign.or.kr)

② 컨설팅 신청 및 접수(사업부서→서울디자인재단 UD팀)

○ **신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완료 전)
- **위원회 심의 접수 2주 전 월요일**까지 신청(컨설팅 사전협의 완료 건에 한함)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2023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유니버설컨설팅 운영 일정**」 참조

○ **신청대상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및 UD 사업 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8조제1항 관련) 중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별표2)」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중 「〈별표〉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제23조 제4호 관련)」에 해당하는 시설

○ **신청방법 :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수신처: 서울디자인재단 UD팀)

○ **제출자료 : UD컨설팅 신청서**(붙임2 참조), **기본도서**(**심의자료**, 현황사진, CAD도면 등), **UD심의대상 사업 점검표**(붙임1 참조) **등**

○ **유의사항 : 컨설팅 신청 1주일 전까지 UD팀에 사전협의 요청**

③ 컨설팅 시행 및 결과통보 (서울디자인재단 UD팀→사업부서)

- 시행일정 : 매주 목/금요일 UD컨설팅 자문회의 개최(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제출자료 검토, 개선방안 도출(UD팀)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종합의견 작성(UD팀, 자문단) → 사업부서에 결과 통보
- 검토범위 : 보행로, 공원·광장,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의 시설물 형태 디자인 외에 배치 및 설치방법 등 중심으로 컨설팅
  ※ 단, 각 위원회 별 심의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검토
- 제공내용 : UD통합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접근·이용·안전·인지성 향상을 위한 종합의견 및 개선방안, 참고사례 제공

④ 컨설팅 결과반영 및 회신 (사업부서→서울디자인재단 UD팀)

- 결과반영 : 컨설팅 항목별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및 도면에 반영
- 회신방법 : 컨설팅 결과 반영한 계획서(조치계획서(붙임3 참조), 심의도서)를 이메일로 회신

⑤ 반영여부 검토 및 확인서 발급(서울디자인재단 UD팀→사업부서)

- 검토방법 :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반영 여부의 적정성 검토 및 종합의견 기재
  ※ 부적합 및 미반영 사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 : 사업부서에 컨설팅 결과 확인서 공문으로 발송(붙임4 참조)

⑥ 위원회 심의접수(사업부서)

- 컨설팅 결과 확인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접수

2 컨설팅 대상

▢ 컨설팅 대상 및 범위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등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별표1,2)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관련 심의대상 중 공공가로, 공원, 디자인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사회기반시설 : 도로시설물(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도시철도시설 중 아래표 대상1의 시설
2. 기타시설물 :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중 아래표 대상2의 시설
3. 디자인사업 : 유니버설디자인사업(아래표 대상3의 시설)
4. 경관심의대상 : 경관심의대상 도로, 도시철도 중 아래표 대상4의 시

〔대상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 종류	컨설팅 범위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카. 트렌치, 맨홀	각 시설물은 보도 위 또는 보도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위치, 방법에 한정함 **※보도패턴, 시설물 자체의 형태와 디자인은 사전 컨설팅 제외**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대상2. 기타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컨설팅 범위
가로 녹지시설	가~마. 가로수 보호덮개, 녹지대, 화분대, 분수대, 벽천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은 보도 위 또는 보도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위치 및 방법에 한정함 ※단, **'교통관련 시설'** 중 **택시·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주차장 관리소, 교통감시시설, 횡단보도 쉘터**와 **'도로점용허가시설물'**의 경우는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디자인 및 형태를 포함하여 검토함
교통관련 시설	가·라·마·사. 각종 안내 표지판 나·다. 택시·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바·아·자. 주차장 관리소,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등 라.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	
기타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공원은 제외)	

〔대상3. 디자인 사업〕

분류	세부항목	컨설팅 범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정보매체, 시설물, 공간, 지역, 프로그램	-

〔대상4. 경관심의 대상〕

분류	시설물 종류	컨설팅 범위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보도공간 ※경관심의 대상의 경우 보도교 등 도로, 도시철도 전체를 포함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철도시설	

※ 경관심의 대상은 해당시설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

3 컨설팅 주요내용

▢ 유형별 주요 검토내용

○ 보행공간

사업부서에 제출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점검표(붙임1 점검표〔보도〕 참조) 및 검토자료(심의도서, 도면)를 토대로 컨설팅

- 유효폭, 기울기, 시각적 방해요소(복잡한 패턴 외)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컨설팅
- 보행자의 차로 횡단구간(횡단보도, 차량진출입구 등)에서의 보행자 우선계획(고원식 적용 등) 적용 및 경계부 주의·경고시설 설치 여부 등 검토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보행 장애 요소 제거 방안 검토(가로등, 가로수 이설, 과도한 보도상 시설물 제거 등)

○ 공원

사업부서에 제출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점검표(붙임1 점검표〔공원〕 참조) 및 검토자료(심의도서, 도면)를 토대로 컨설팅

- 공원·광장 내 보행공간의 형태와 구조가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 검토
- 공원·광장 내외부 보행의 연속성 확보 검토(출입구 경계부의 단차, 기울기 등)

- 시설물(안내사인, 벤치/테이블 등), 보행 장애물의 설치 위치가 유아차, 휠체어이용자, 저시력자, 고령자 그리고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였는지를 사업대상지 특성 및 현황에 맞추어 컨설팅

○ **공공건축물**

사업부서에 제출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점검표(붙임1 점검표〔건축물〕 참조) 및 검토자료(심의도서, 도면)를 토대로 컨설팅

- 진입공간(보행/차량/건물 접근성 등)부터 내부공간까지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지 등 검토
- 내부 편의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피난시설, 안내시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지 등 검토
- 그 외 사업대상지 특성 및 현황에 맞추어 컨설팅(예. 공연장의 경우 무대 및 객석, 샤워실 구조 등 검토)

○ **기타사항**

- 설치되는 시설물의 접근성, 시설물 자체의 이용성 등 검토
- 사업대상지 및 주변 구역의 현황과 사업단계별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제안

4 업무분장

○ **컨설팅 사전협의 및 신청 : 서울디자인재단 UD팀**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사전협의 및 접수 : 市 디자인정책담당관**

〈붙임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점검표
〈붙임 2〉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신청서(서식)
〈붙임 3〉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조치계획서(서식)
〈붙임 4〉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결과확인서(서식)
〈붙임 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주요 검토 내용 및 사례 예시

〈붙 임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

※ 아래 기준 외 사항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계획

※ 항목별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항목별 기준이 적용된 경우 '적용유무' 체크

※ 미적용이나 해당 없는 경우 근거 사유 명기

☐ 점검표〔보도〕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1. 보행공간						
1	보행안전공간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 확보)**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보행공간 조성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보행안전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혼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지역과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유효폭 확보				
		(단차, 바닥재질) 보행안전공간의 바닥은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경사구간인 경우에는 더 강한 미끄럼 방지 성능 확보				
2	보행유도 및 경고시설	**(보행유도 및 인지성)** 보행안전공간은 시각장애인 등이 연속적이고 안전한 보행과 적절한 보행유도가 가능하도록 하며, 약시자 등이 보행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롭도록 함				
3	보행편의시설	**(휴게공간)** 보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및 형태로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이 함께 이용 가능한 여유 공간 확보				
		(보행공간 조도 확보) 흐리거나 야간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적정 조도 확보				
4	공지 접근	**(보도와 공지 경계)** 보도와 연접한 공지와의 경계 등은 보행안전공간과 연속되고 단차 없이 설치				
5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공간	**(보차혼용도로)** 보차혼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역 표시(차도측면 보도 라인, 포장색상/재질 등을 활용)				
2. 가로시설물						
6	보행장애물 제거	**(시설물 구역 조성)** 보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시설물 등을 집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며, 시설물 구역에 녹지대, 식재대,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 증진				
		(가로수 식재)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보도의 녹지대 또는 가로수는 보행안전 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설치하며,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에서 교통신호기, 안내표지판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식재 관리				
3. 보도상 설치되는 교통 관련 시설						
7	자전거 도로 접점구간	**(보행자 안전성 확보)**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				
		(보행로와 교행구간)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교행구간이 없도록 계획하며, 교행구간 발생 시 보행자 주의·경고 및 자전거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8	정류소, 승강장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 방법)**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환풍구, 승강기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				
		(정류소, 승강장 설치방법)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는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9	차량진출입구	**(보행로와 차로 교차부분, 경계구간 처리)**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재질·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게 보행안전공간 확보				
10	횡단보도	**(턱낮춤 방식)**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부분경사로, 고원식 경사로 설치				
		(경고 및 안전시설)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및 횡단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 설치				
4. 안내시설						
11	안내시설	**(구역안내)** 특화거리,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안내도 설치(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인근 여객시설 등 주요 편의시설 표시)				
		(방향안내) 주요 여객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 안내시설 설치				
	우회동선안내	**(우회동선안내)** 기울기가 급하거나, 계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회동선 안내시설 설치(1/18이하 기울기 보도, 승강기 이용 가능 동선 등)				

〈붙 임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

※ 아래 기준 외 사항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계획

※ 항목별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항목별 기준이 적용된 경우 '적용유무' 체크

※ 미적용이나 해당 없는 경우 근거 사유 명기

☐ 점검표〔공원〕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1. 진입공간						
1	보행접근	**(보행안전공간 확보)** 주요 여객시설(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소 등)에서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인 보행안전공간 확보				
		(보행유도) 주요 여객시설(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소 등)에서 공원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연속적인 보행유도 안내시설 설치				
2	주출입구	**(주출입구)** 주출입구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 차이가 있을 시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				
		(진입통제시설) 출입구에는 속도가 빠른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성 확보				
3	차량접근	**(주차장입구 안내)**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시설 설치				
		(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명확하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하도록 위치안내 표지판을 연속하여 설치				
		(주차공간) 공원의 주요시설의 출입구별, 동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				
		(보행통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시설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보행통로 확보				
2. 공원내부공간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4	이동공간 (산책로)	**(산책로)** 공원 내 주 이용시설(공원시설, 위생시설, 관리사무실 등)을 연결하는 보도는 주요 보도로서 휠체어, 유아차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 없는 기울기와 재질로 설치				
		(주요 보도의 보행안전공간) 공원 내 주요 보도는 누구나 이용 및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며, 공원 내 다른 이동수단(자전거 등) 통로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과 교행이 없도록 계획				
		(계단과 경사로) 주요 보도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보행유도)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은 누구나 인지 가능하도록 보행유도의 연속성 확보				
5	위생공간	**(설치위치)** 공원 내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배치				
		(출입구) 공원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수평 진입을 확보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 확보				
		(모두를 위한 화장실) 공원 내 주요 경로에는 남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 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일반화장실) 일반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육아 편의시설)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각 1개소 이상 설치.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거치대 설치. 단, 위의 시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제외 가능				
6	편의공간	**(휴게공간)** 공원 내 휴게시설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 확보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육아편의공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공원의 경우에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편의공간을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				
		(공원시설 접근 및 이용) 공원 내 주요시설(정원, 놀이공간, 운동공간 등)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성 확보				
3. 안전환경						
7	안전환경	**(위험 구역 주의, 경고시설)** 공원 내 추락 및 낙상사고 발생 위험 구역 등에는 시각장애인,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이 실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한 보도) 공원 내 보도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인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전한 화장실) 공원 내 화장실은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감시 및 경보시설 설치				
4. 안내 및 편의설비						
8	안내시설	**(종합안내)** 공원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안내시설 설치				
		(방향안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등에는 주요 보도의 교차로, 주요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안내시설 설치				
9	편의시설	**(매표소, 안내데스크 등)** 공원 내 매표소 또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판매기 등) 공원 내 판매기, 발매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음수대/간이 세면시설 등) 공원 내 음수대, 간이 세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붙 임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

※ 아래 기준 외 사항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계획

※ 항목별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항목별 기준이 적용된 경우 '적용유무' 체크

※ 미적용이나 해당 없는 경우 근거 사유 명기

☐ 점검표〔건축물〕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1. 진입공간						
1	대지 출입구	**(대지 출입구 경계 및 보차구분)** 대지 경계의 출입구는 누구나 접근 및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하며, 보행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출입구 인지성) 대지 경계에서 보행자가 쉽게 건물명, 출입구,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계획(출입구 등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용도 등), 출입구의 위치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보행자용 안내시설 설치)				
2	보행접근	**(보행안전공간 확보)** 대지 출입구 경계에서부터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연속된 보행안전공간 확보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안전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혼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유효폭 확보				
		(단차, 바닥재질) 보행안전공간은 무단차로 평탄하게 하며, 우천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경사구간인 경우에는 더 높은 미끄럼 방지성능 확보				
		(보도시설물 설치 방법) 보도 위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이외의 곳에 설치하며,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접근로의 단차 제거)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며, 이용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보행유도) 대지 경계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을 유도하고, 보행안전공간은 약시자 등이 보행자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롭도록 함				
3	차량접근	**(주차장입구 안내)**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시설 설치				
		(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쉽게 인지·이해 가능한 연속되는 방향 및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공간) 시설의 출입구별, 동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				
		(보행통로) 주차장 내에 운전자 및 동승자가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혹은 시설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보행통로 확보				
2. 내부공간						
4	주출입구 (문)	**(주출입구 인지성)**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주출입구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형태적,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계획				
		(높이 차이 제거 및 활동공간) 주출입구는 보행 접근로에서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출입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				
		(주출입문 유효폭과 형태) 주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목발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적절한 형태로 설치				
		(경고용 시설) 출입문은 부주의한 사람, 약시자와 같은 시각장애인 등의 충돌방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적절한 경고용 시설 설치				
5	내부 이동공간	**(실내출입문)** 실내 출입문은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인지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과 형태로 설치				
		(로비/홀의 공간구성)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로비/홀 진입 시 주요 수직이동시설(계단, 승강기 등)과 주요 편의시설(화장실, 안내시설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				
		(수평이동공간)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이동과 회전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통로폭을 확보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				
		(수직이동공간) 수직 이동빈도가 높은 곳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계단과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설치				
6	위생공간	**(설치위치)** 건물 내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출입구(문)) 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혼자서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 접근이 가능하고, 충분한 출입구 공간 확보				
		(유도 및 안내시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설치				
		(안전한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위생시설의 바닥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며,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감시 및 경보시설 설치				
		(모두를 위한 화장실) 주출입층에는 남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그 외 층은 여건에 따라 남녀 장애인 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일반화장실) 일반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육아 편의시설)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각 1개소 이상 설치. 대변기 칸막이 내 유아시트 설치. 단 위의 시설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제외 가능				
3. 피난시설						
7	피난 및 대피시설	**(피난/대피 구조 및 시설)**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위급 상황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거나 구조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관련시설을 설치				
4. 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						
8	안내시설	**(종합 및 방향안내)** 각 층별 주요 편의시설(수직이동, 위생시설, 안내시설, 육아편의 공간 등)과 주요실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단, 색상, 글자체,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인지 및 이해성 확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법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규모가 큰 공간인 경우에는 실내외 음성유도 시설 등 별도의 보행유도 시설 설치				
9	기타이용시설	**(접수대 또는 안내데스크)** 접수대/안내데스크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				
		(육아편의공간)				

연번	항목	기본지침	적용내용	점검표		미적용 사유
			도서 번호	적용	해당없음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편의 공간을 설치하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안내견 배려시설) 건물 내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				
		(관람석, 무대 등) 무대, 관람석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 등의 자립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붙 임 2〉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신청서(서식)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사 업 명	- 명칭 :	
사업목적		
사업내용		
위 치		
규 모	대지면적	㎡
	사업면적 (또는 연장, 개소)	㎡(m, 개소)
주요시설	주요 용도, 주요 공간 등	
사업기간	'00. 00~ '00. 00 (준공 예정:)	
사업담당	시·구 (부서) 성명: ○ ○ ○ (연락처: - , 이메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 제11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 20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1부시장 방침 제204호, '20.8.28)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디자인재단 귀하

첨부자료	심의자료, 설계도면, 현황사진, 그 외 검토 가능한 자료 등

〈붙 임 3〉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조치계획서(서식)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조치계획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항목구성 변경 가능

항목	현황	개선(안)	적용	반영	적용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접근과 이동			*필수*		
			권장		
공간 및 시설의 이용					
인지 및 이해					
안전					
기타 이용					

반영 전	반영 후

〈붙 임 4〉 유니버설디자인 사전 컨설팅 결과확인서(서식)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결과 확인서

UD컨설팅 개요 및 의견 종합

사 업 명

사전검토	준공검사	모니터링

대상시설 개요			비고
사업명			
위 치			
주 용도			
주 이용자 유형			
규 모	대지면적(㎡)		
	사업면적(㎡)		
준공연도 (예정/준공)			
사업 관계자	발주처		
	설계		
	시공		
	시설관리		

UD컨설팅 개요					
	자문위원	소속	직책	성명	일시
자문위원 및 컨설팅 일시	1				
	2				
	3				
	4				
	5				

종합의견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디자인재단

〈붙 임 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주요 검토 내용 및 사례 예시

■ **접근과 이동** : 유효폭, 기울기, 재질, 횡단보도 등의 이용 및 안전성 등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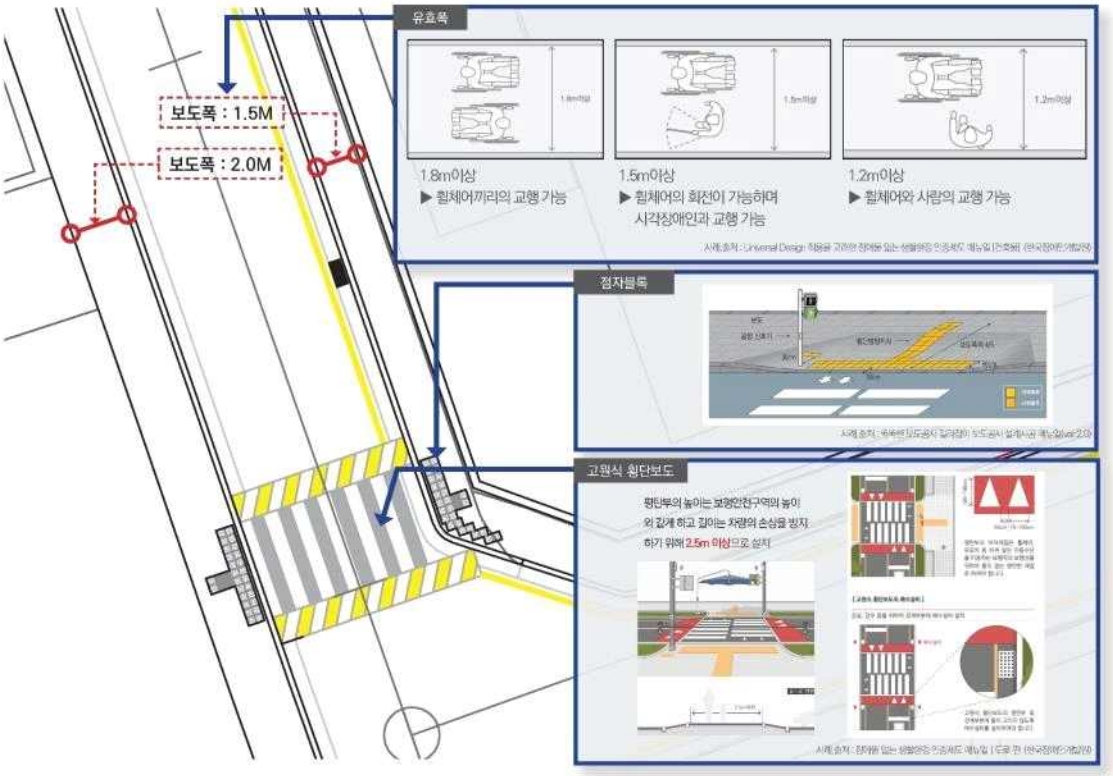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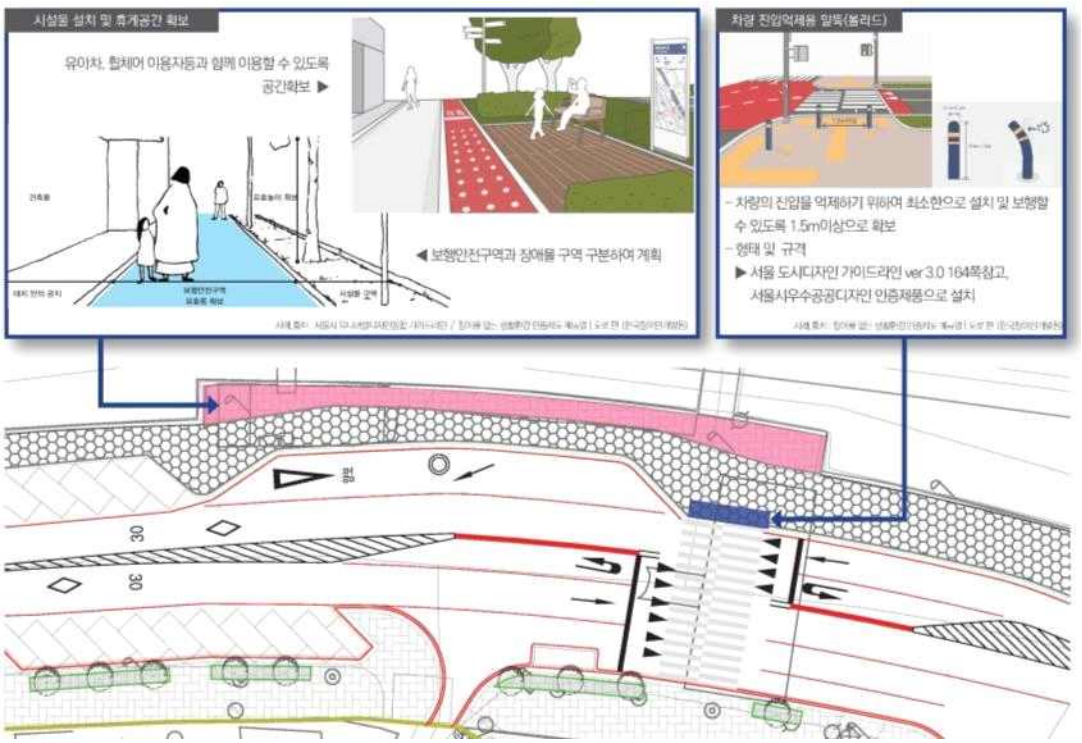
■ **공간 및 시설의 이용** :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인지성 등을 검토